

##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8. 12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제안이유

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증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"1998년 12월 31일"이 "2000년 12월 31일"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가.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적용기간을 종전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던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(안 부칙제2항).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55호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“1998년 12월 31일”을 “2000년 12월 3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	부 칙
①(시행일) (생략)	①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②(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 15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 후부터 <u>1998년 12월 31일</u> 까지 부과징수 (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소 득세,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 터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	②(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관한 적용례)— <u>2000년 12월 31일</u> _____
1.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	1. _____
2.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 우	2. _____
3.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 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 우	3. _____
③(일반적 경과조치) (생략)	③(일반적 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